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5

제안연월일 : 2026. 10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사항 반영이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,

○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에 근거하여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○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(대상사무)
- 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제8조(위탁관리)

○ 추진 필요성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○ 위탁범위 :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
○ 사무내용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
-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수행
-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위　　치 :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89,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 1층

○ 시설규모 : 연면적 837.12㎡, 지상 1층

○ 구　　조 : 북카페, 식당, 다목적 강당, 건강증진실, 사무실 등

○ 위탁기간 : 2024. 4. 24. ~ 2026. 12. 31.

○ 위 치 도

위　치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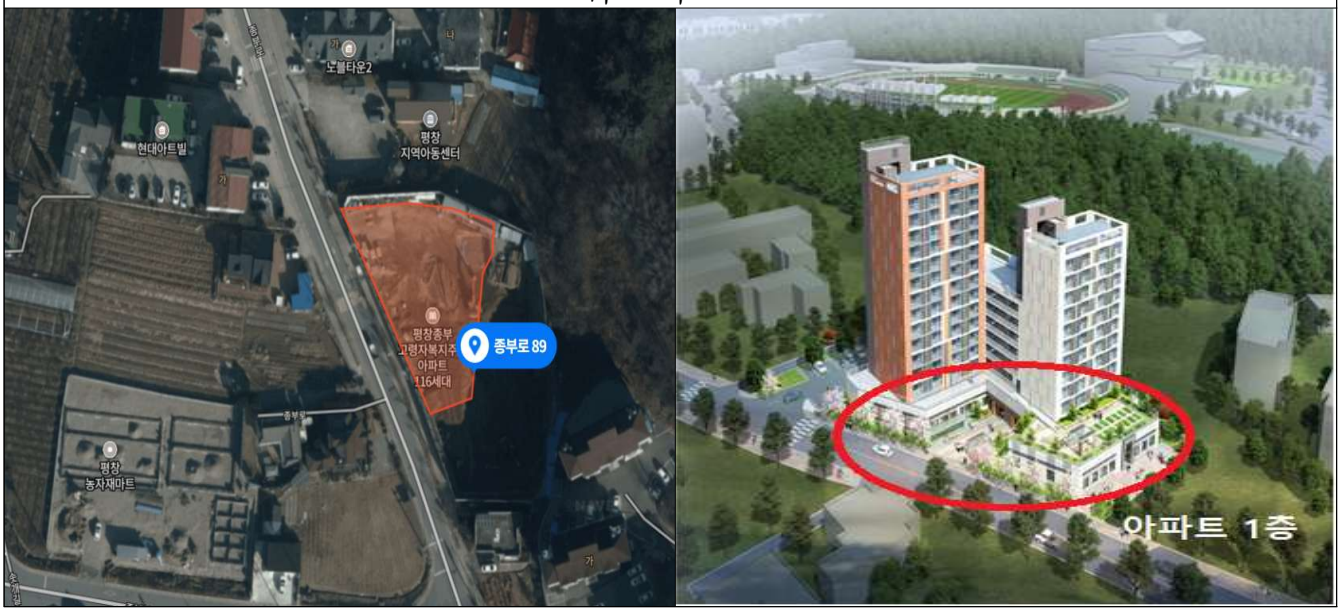

마. 민간위탁기간

○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

○ 신청자격 : (사)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2026년도 예산 : 민간위탁금 270,000천원(군비)

- 인건비(2명) : 71,180천원
- 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) : 143,820천원
- 사업비(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) : 55,000천원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

-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

○ 위탁 필요성

-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욕구 대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 지원 필요
-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
-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적합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현황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2024. 2. 29.
-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 : 2024. 3. 15.
-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: 2024. 4. 16.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사무 위·수탁 계약 : 2024. 4. 23.

○ 향후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2026. 11.

- 위·수탁 계약 체결 : 2026. 12.

관계법령 발췌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8조(위탁관리) ① 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□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

제8조(위탁관리) 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**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**

(이하“수탁자”라 하다)에 위탁 ·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(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④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. 다만,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